변호사 마스다 가츠히사(増田勝久)입니다. 우판사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이 10여년 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앞서 도산절차를 포함한 민사재판 절차의 디지털화를 실현한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도산사건을 비교적 많이 취급하고 있는 변호사이며 도산실무가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판사님의 보고는 다방면에 걸쳐있습니다만, 5분이라는 시간 관계로 IT화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도산채권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웹회의 등에 의한 영상을 이용한 채권자집회 등은 한국에서는 최근(2021년)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의해 이론상 가능해졌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2023년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결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자집회 등에 있어서는 비용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이론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판사님의 보고에도 있었듯이,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방법, 의결권행사방법, 통신장애 발생시의 조치 등에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대리인의 자격, 그 동일성, 의결권 이의가 나왔을 경우의 처리 등도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5종의 주주총회와의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가상 주주총회에 필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 정비를 포함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의를 목적으로 한 재건형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 등에 있어서는 출석의 용이함은 물론, 채권자의 의사형성절차의 보장도 중요하며, 리얼(real)집회가 가지는 의사표명방법 및 진행의 유연성, 많은 지점과 접속하는 것에 의한 통신장애 리스크의 증대 등도 고려해, 웹회의를 이용한 집회에 의한 투표와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제도상으로는 가능한 전자투표(민재 169조 2항 2호) 또는 이것과의 병용(동항 3호)과의 비교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한국에 전자투표를 이용한 서면 등 투표제도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등의 점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건기록의 열람에 수반하는 문제점에 대해 코멘트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자화 전에는 법원에 가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었던 사건기록에 자사(自社)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 관한 정보의 입수용이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종래에는 다수의 채권자는 절차의 진행에 무관심했지만, 향후에는 기록을 열람하면서 절차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채권자가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청구의 상대방 등에게 모든 기록에 대한 접근을 인정함으로써 불편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적절한 재량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인마다의 포괄적인 허가가 아니라 개별적인 열람청구에 대해 그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그 허가 기준 등은 일본에서도 운용에 있어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산절차는 다수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하는 절차로 파산관재인, 관재인, 회생채무자, 감독위원들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 결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 등의 과정에서의 파산관재인, 재생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다수의 교환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재판기록 외의 커뮤니케이션 툴의 구축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점에 대한 한국의 현황을 여쭤봄과 동시에, 일본에서도 현재 민사소송에서 이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활용 등 향후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도산절차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일본도 지금부터 스타트 라인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싶고, 잘 부탁드립니다.